

<별표 8> <개정 2010.12.29., 2020.3.30.>

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

(제3-7조제2항 관련)

구 분		산 정 액	비 고
담보	예·적금 및 신탁 주식	불입액의 100% 공정가액의 100% 단, 공정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종 목의 경우 당해 주식발행회사의 최근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의 90%	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가액
	사채권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(금융채 포함) 은행지급보증서, 신용보증서, 보증보험증권 대 지 건 물 아파트 자동차, 중기, 선박 등 산업재산권, 저작권, 시설이용권 등 경매진행중인 담보	공모의 경우 공정가액의 100%, 사모의 경우 공정가액의 95% 보증(보험)금액의 100% 공시지가의 100% 과세시가표준액의 100% 국세청 기준시가의 100% 최종감정가액을 관련 세법에 따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정 액 차감 시가 또는 최종감정가액의 70% 최종 법사가	
「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 생절차가 인가된 기업체에 대한 채권 기업구조조정협약이 확정된 기업체에 대한 채권		조정된 미래상환일정에 따라 수취 하게 될 원리금액을 적정한 할인 율로 할인한 금액 (현재가치 상당가액)	

<주의사항>

-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선순위 등을 공제하여야 하며, 관련법령 또는 금융약관 자체 내규에서 담보로 취득을 제한한 물건은 회수예상가액 산정대상에서 제외
- 시가는 매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산정
- 할인율은 인가결정 또는 협약 확정 당시 해당 채권의 재조정 직전 연체요율을 배제한 약정 이자율(약정이자율이 없는 경우 유사채권의 시장평균이자율)을 적용
- 부동산신탁업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
 - 부동산신탁업자는 신탁사업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·운용한다.
 - 회수예상가액은 토지 및 건물 등의 처분시 실제 회수가 가능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, 부대비용을 차감한다.
 - 준공일 이후 6월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분양률이 60% 미만인 신탁사업인 경우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 전담조직에서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.